

정책연구 2017-4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조경업



정책연구 17-4

2017. 8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2015),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공저, 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 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공저, 2009),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공저,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공공경제, 2007), 「2003~2005년 세계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공공경제, 2006) 등이 있다.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판1쇄 인쇄 | 2017년 8월 10일

1판1쇄 발행 | 2017년 8월 1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6층

전화 02-3771-0001(대표)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7

ISBN 978-89-8031-794-3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19720)

CONTENTS

요 약	5
I. 서론	10
II. 기본소득제 사례	12
1. 한국의 복지지출 현황	12
2.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14
3.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	19
4. 머레이의 UBI 도입	24
5. 스페인의 UBI 도입	28
III. 경제적 영향	33
1. 분석모형	33
2. 분석결과	38
IV. 시사점	44
참고문헌	47

CONTENTS

표 목 차

〈표 1〉 한국의 복지재정과 사회보장 지출	12
〈표 2〉 보건·복지·고용분야 구성 및 소관부처	13
〈표 3〉 가구 규모별 면세점 소득	17
〈표 4〉 프리드먼 음의 소득세 도입 시 가구당 지원금	17
〈표 5〉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가구수	18
〈표 6〉 프리드먼 음의 소득세 실시에 따른 총 지원규모	19
〈표 7〉 토빈의 음의 소득세 실시 시 가구당 지원금	22
〈표 8〉 토빈의 근로 유인을 위한 가구당 세제 인센티브	22
〈표 9〉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총 지원금	23
〈표 10〉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총 세제지원 금액	23
〈표 11〉 한국 가구규모별 중위 소득의 50%	26
〈표 12〉 머레이의 UBI 도입 시 가구당 지원금	27
〈표 13〉 머레이의 UBI 도입 시 총 지원금	27
〈표 14〉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가구당 지원금	30
〈표 15〉 소득계층별 추가세금	30
〈표 16〉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총 지원금	31
〈표 17〉 스페인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액	31
〈표 18〉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순지출액	32
〈표 19〉 소득분위별 복지수혜금액(2015년 기준)	34
〈표 20〉 산업부문과 자영업 부문의 취업 현황	35
〈표 21〉 산업부문과 자영업 부문의 소득계층별 취업 현황	35
〈표 22〉 지니계수 변화	39
〈표 23〉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실업률 변화	40
〈표 24〉 프리드먼 NIT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41
〈표 25〉 토빈의 NIT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41
〈표 26〉 머레이의 UBI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42
〈표 27〉 스페인의 UBI에 따른 노동 변화	42
〈표 28〉 GDP 변화	43
〈표 29〉 가구당 수혜금액과 총 필요재원	45
〈표 30〉 노동 변화	46

그림 목 차

〈그림 1〉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16
〈그림 2〉 토빈의 음의 소득세	21
〈그림 3〉 머레이의 UBI	25
〈그림 4〉 스페인의 UBI	29
〈그림 5〉 노동의 흐름도	37
〈그림 6〉 지니계수 감소효과	45



1. 서론

- ▶ 4차 산업혁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반면 막대한 재정을 쓰면서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어 현행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노동의 역유인 효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꺼리고 있음
 - 본 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소득재분배, 노동환경 변화 측면에서 대표적인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와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기본소득제의 종류

- ▶ 기본소득제는 크게 음의 소득세(NIT)와 보편적 기본소득제(UBI)로 구분되며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간의 진영논쟁을 야기하고 있음
 - 진보·좌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소득을 지급’하는 머레이(Murray)와 스페인(Spain) 식의 UBI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보수·우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NIT를 선호하고 있음

▶ 프리드먼(1962)과 토빈(1966)은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제거, 빈곤퇴치, 근로 유인 확대를 목적으로 음의 소득세를 제안

- 면세점 이하의 빈곤층에게 단일세율(t)로 부과되는 음의 소득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B_w = t(\bar{Y} - Y_w) \quad (1)$$

- 여기서 B_w 는 w 가구가 받는 보조금(음의 소득세)을 의미하며, t 는 음의 소득세율, \bar{Y} 는 면세점 소득, Y_w 는 w 가구의 실제소득(시장소득)을 의미함
-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율을 0.5로 제안한 반면, 토빈은 근로 역유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0.33으로 제안하였음
- 프리드먼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면세소득을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이 0인 4인 가구에 보장되는 소득은 2,500만 원이 되며, 토빈의 경우 보장소득은 1,667만 원이 됨
- 토빈은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는 양의 소득세가 현행 소득세보다 클 경우 근로 역유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를 양의 소득세율까지 인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UBI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NIT와 차이가 있음

- 머레이의 UBI는 중위소득의 50%에 달하는 소득을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식 UBI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머레이는 UBI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소득이 넘는 가구에게는 지원금의 일정비율의 세금을 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함
- 반면 스페인식 UBI는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지만, 모든 현행 소득세를 폐지하고 단일세(flat tax)로 전환하는 세계개혁을 평행 추진한다는 점에서 머레이의 UBI와 차이가 있음

3. 가구당 보조금과 소요재원

▶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재원충당이 가능한 토빈의 NIT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추가 자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UBI를 도입하면 심각한 자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 1분위 계층에 속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은 프리드먼 NIT 1,928만 원, 토빈 NIT 642.7만 원, 머레이 UBI 2,534만 원, 스페인 UBI 2,930만 원으로 추정됨
- 스페인 UBI 경우, 25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에서 폐지할 수 있는 현행 복지제도를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근로 장려금이라고 가정할 때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54.8조 원에 달함
- 따라서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약 21.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한 반면 토빈의 경우는 4.1조 원의 재원이 남을 전망이다
- 머레이 UBI가 도입되면 총 266.4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193.3조 원보다 73.1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총 34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제외한 모든 공적부조를 폐지해서 확보한 117.3조 원과 세제개편을 통해 159조 원을 조달해도 여전히 약 65.2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함

가구당 수혜금액과 총 필요재원

	프리드먼	토빈	머레이	스페인
4인 가구 1분위 기준(만 원)	1,928.1	642.7	2,534	2,930 (-259.5)
총 필요 재원 (십억 원)	75,915.7	50,610.5	266,366.5	341,459.6 (-158,9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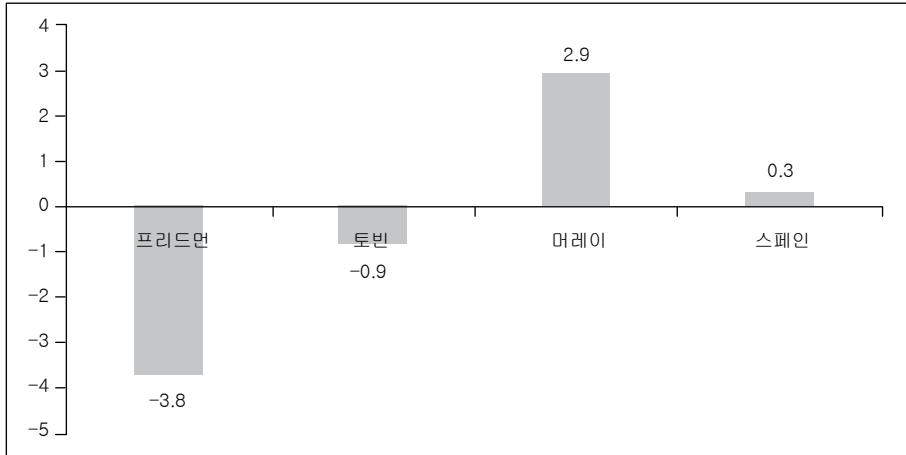
주: ()는 추가 세부담을 의미함

4. 소득재분배 효과

▶ 모든 기본소득제가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근로 역유인 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며, UBI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는 소득재분배를 각각 3.8%와 0.9%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머레이와 스페인의 UBI는 소득재분배를 각각 2.9%와 0.3% 악화시킬 전망이다

지니계수 감소효과(%)



5.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실업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근로 역유인 효과는 NIT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UBI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

- 청년비중이 높은 3분위 계층의 실업은 스페인의 UBI에서 26.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모든 제도에서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는데, 특히 UBI에서 크게 나타남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의 경우 고소득층의 고용이 증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각각 46,120명과 57,66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노동 변화(명)

	실업	비경제활동	제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프리드먼	21,512	442,511	46,120	-510,143
토빈	4,570	50,312	57,663	-112,545
머레이	55,376	1,517,653	-377,157	-1,195,873
스페인	59,780	1,517,178	-34,330	-1,542,629

6. GDP에 미치는 영향

- ▶ 토빈의 NIT가 도입되면 GDP는 0.41% 증가하는 반면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0.18%, 머레이의 UBI가 도입되면 5.07%,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2.4% 감소할 전망

GDP 변화(%)

	GDP 변화
프리드먼	-0.18
토빈	0.41
머레이	-5.07
스페인	-2.40

7. 정책적 시사점

- ▶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눈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할 때 현행 복지제도의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높음
 -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재원의 규모가 다르고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 제도 도입 전에 철저한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필요 재원규모, 노동의 역유인 효과,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UBI 보다는 NIT 도입이 바람직하며, NIT 중 노동 역유인 효과가 적은 토빈의 NIT가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로 평가됨
 - 기본소득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행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한다는 기본전제가 엄수되는 것임
 -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복지제도에 불과하여 기본소득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노동공급 감소, 소득재분배 악화, 자원낭비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본소득제로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I. 서론

- ▶ 기본소득은 인간의 권리로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음
 - 페인(Paine), 플리에(Fourier), 샤를리에(Charier)의 토지배당, 러셀(Russell)의 최소소득, 더글라스(Douglas)의 국가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제시되었음¹⁾
 - 그러나 비스마르크가 보험원리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의료복지, 노령연금, 공교육 등)를 도입한 이후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복지국가체제를 선택함으로써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식어왔음²⁾
- ▶ 현행 복지국가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제가 재조명되고 있음
 -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인기영합적인 복지제도가 양산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앗아 갈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음
- ▶ 기본소득제는 크게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와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로 구분되며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간의 진영논쟁을 야기하고 있음
 - 진보·좌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소득을 지급’하는 머레이(Murray)와 스페인(Spain) 식의 UBI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

1) 복거일 외(2017)에 따르면 18세기에는 기본소득을 권리의 개념으로 논리를 개발하였는데, 페인은 토지를 사유화한 지주들이 지대의 일정 몫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플리에와 샤를리에 도 토지 소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보고 이를 빼앗아 사유화한 계급은 지대의 일정 몫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배당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음. 1900년대에 들어 러셀은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필수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나머지 소득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기여한 만큼 배분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더글라스는 기술혁신이 야기할 대량실업의 대책으로 사회신용과 국가배당을 제안하였음. 기본소득의 변천 및 다양한 제도에 대한 내용은 복거일 외(2017) 참조

2) 복거일 외(2017) 참조

- 소득수준과 노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대표적인 UBI로 꼽히는 머레이와 스페인제도를 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특별부가세와 세제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이에 반해 우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NIT를 선호하고 있음
- 프리드먼은 빈곤퇴치, 복지제도의 단순화, 근로 역유인 효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NIT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이후 토빈은 근로 유인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NIT를 제시
- 두 제도 모두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여 막대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없을 거라는 것과 근로 역유인 효과가 심각할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소득재분배, 노동환경 변화 측면에서 대표적인 NIT와 UBI 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핵심 논쟁이 필요자원 규모, 소득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됨
-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수혜규모와 총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있음
- 또한 KERI-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제도가 소득재분배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기본소득제는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노동의 역유인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의 고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시킨다면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여 여부, 실업과 고용여부, 고용부문(산업과 자영업) 선택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고,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 노동환경 변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함



II. 기본소득제 사례

1. 한국의 복지지출 현황

- ▶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의 총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193.3조 원에 달함³⁾
 - 공공부조로 115.7조 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4대 보험으로 77.6조 원이 지출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공공부조의 공적연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사회연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학연금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1〉 한국의 복지재정과 사회보장 지출

(단위: 억 원)

부문별	2014년	2015년
기초생활보장	88,310	94,773
취약계층지원	17,987	23,688
공적연금	364,031	396,612
보육가족여성	57,156	54,278
노인청소년	65,619	90,362
노동	144,588	155,162
보훈	44,576	46,376
주택	182,343	183,867
사회복지일반	7,440	7,697
보건의료	19,451	22,808
건강보험지원	69,665	77,442
식의약품관리	3,221	3,760
복지재정 합계	1,064,387	1,156,824
근로장려세	10,216.82	16,274
4대보험	575,010	624,570
국민연금	137,800	151,840
사회보장 합계	712,810	776,410
합계	1,777,197	1,933,234

자료: 대한민국재정 2016, 국회예산정책처

3) 본 연구는 2015년의 한국의 복지패널조사,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고 있어 복지관련 자료도 2015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때 기본소득제의 가구당 지원금액 및 필요재원의 규모와 현행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제도를 폐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음

- <표 2>에 나타난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NIT제도가 도입될 때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근로장려금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NIT 도입을 위해 복지제도의 일부를 폐지하여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2016년 기준 54.8조 원에 달함
- 머레이와 스페인의 UBI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필요재원이 상당한 만큼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 머레이의 UBI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조를 폐지하면 193.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스페인의 UBI 도입을 위해 공공부조와 근로장려세를 폐지할 경우 117.3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표 2> 보건·복지·고용분야 구성 및 소관부처

부문	소관 부처	주요 내용
기초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및 긴급복지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취약계층지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 아동복지지원, 장애인지원, 노숙인 · 의사상자 지원 ·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 일자리지원 · 아동안전지킴이
공적연금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 국민연금 운영 ·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 군인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보육지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가족기능강화,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 민간보육시설지원
노인·청소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노인생활안정, 노인의료보장 등 ·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등 · 청사취득 등 운영비
보훈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 보훈심사 및 보상, 보훈의료복지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주택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사회복지일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사회복지 기반조성, 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육성,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제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등

자료: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14

2.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가)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정의

▶ 프리드먼(1962)은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제거, 빈곤퇴치, 근로 유인 확대를 목적으로 음의 소득세를 제안⁴⁾

- 면세점 이하의 빈곤층에게 단일세율(t)로 부과되는 음의 소득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B_w = t(\bar{Y} - Y_w) \quad (1)$$

- 여기서 B_w 는 w 가구가 받는 수혜금액(음의 소득세)을 의미하며, t 는 음의 소득세율, \bar{Y} 는 면세점 소득, Y_w 는 w 가구의 실제소득(시장소득)을 의미함

- 프리드먼의 NIT가 보장하는 소득은 면세점소득에 세율을 곱한 G 와 같음

$$\begin{aligned} Y_w^g &= Y_w + t(\bar{Y} - Y_w) \\ &= G + (1-t)Y_w \end{aligned} \quad (2)$$

- 여기서 Y_w^g 는 세후 총소득을 의미함

- 프리드먼의 NIT는 면세점 소득이 높고 세율이 높을수록 보장소득이 커짐

나)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도입 시 가구당 소득변화와 노동공급 변화

▶ 프리드먼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음의 소득세율을 0.5로 가정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면세소득을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가구당 소득변화와 정부의 가구당 지원금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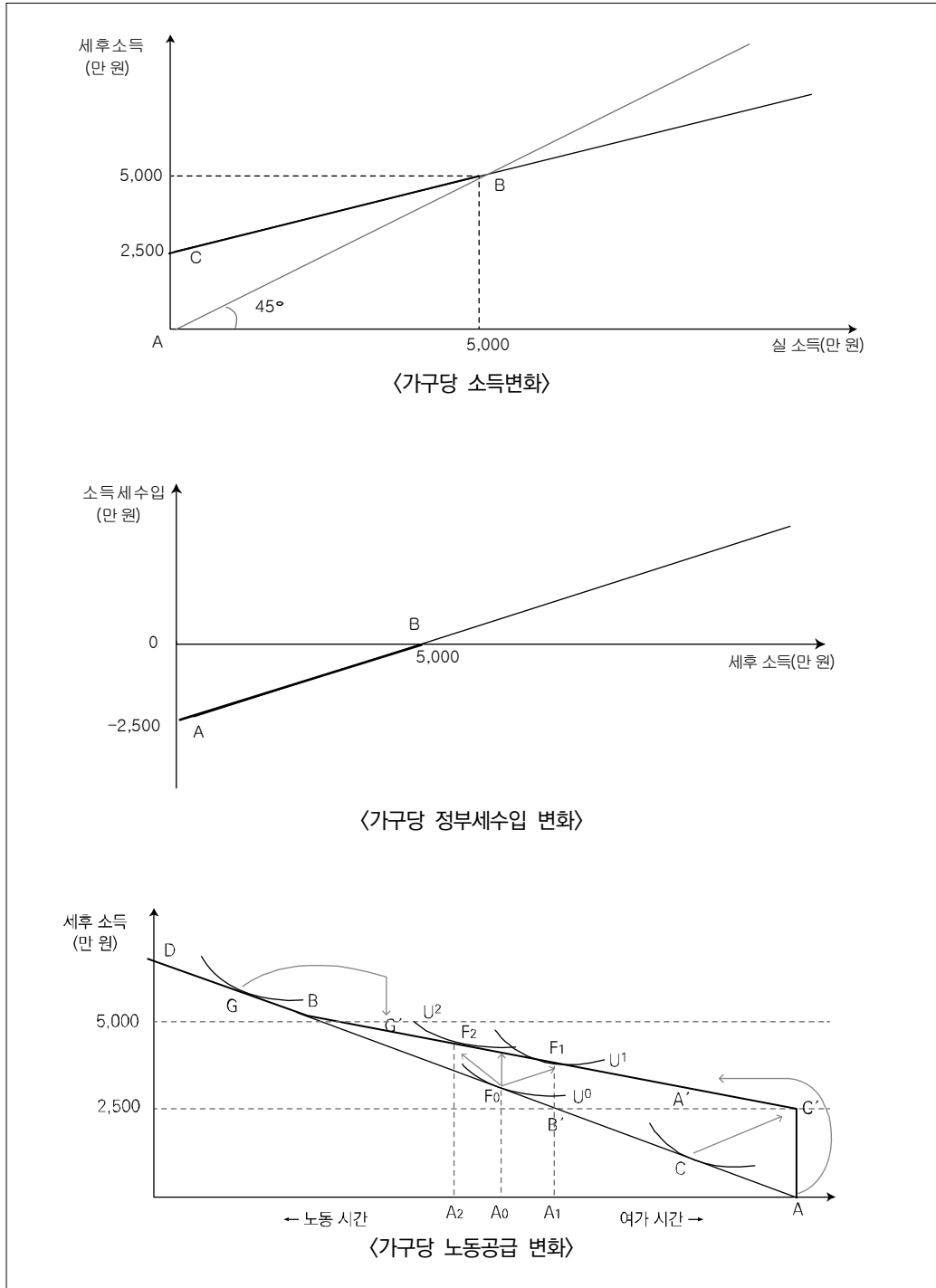
-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음의 소득세)은 4인 가구 기준 2,500만 원이 되고, 시장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감소하다가 시장소득이 면세점 소득과 같아지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0이 됨
- 정부의 지원금은 시장소득이 0인 가구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이 작아져 면세점 5,000만 원이 넘는 4인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게 됨

4) 「Capitalism and Freedom」, Freedman(1962) 12장 참조

▶ <그림 1>의 세 번째 그림은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NIT가 도입되기 전의 노동자의 예산제약선은 AD이고 NIT가 도입되면 예산제약선이 ACBD로 이동하게 됨
- 노동공급을 전혀하지 않는 근로자의 소득은 0에서 연간 2,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다가 B점이 지나면 예전의 예산 제약선과 같아짐
- 프리드먼은 NIT를 노동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지만 Moffit(2003)에 따르면 NIT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함
- 소득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결정됨
 -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을 줄이고 여가를 선호하는 소득효과와 임금이 상승하여 여가대신 노동을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됨
 - 세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NIT가 도입되기 전의 초기 균형을 무차별곡선 U^0 와 예산제약선 AD가 만나는 F점이라고 가정할 때 노동시간은 OA_0 이고 여가는 A_0A 가 됨
 - 음의 소득세가 도입되어 예산제약선이 ACBD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은 F_1, F_2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노동시간이 OA_2 로 늘어나거나 OA_1 으로 줄어들 수 있음
 - 현재 F점에서 노동을 공급하던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노동 공급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노동공급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음
 - 음의소득세가 도입되면 노동공급을 전혀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OA전량을 여가로 소비하던 사람도 A'로 이동하여 양(+의) 노동을 공급할 수 있고 반대로 음의 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C점에서 노동을 공급하던 사람도 음의 소득세가 도입되면 C'으로 이동하여 노동을 전혀 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의 노동공급과 소득이 G점에 놓여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을 줄이고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그림 1〉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다) 프리드먼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재원규모 추정

(1) 가구별 지원금

▶ 한국의 복지패널조사의 가구별 소득에 프리드먼의 NIT를 적용하여 가구당 수혜금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앞서 설명하였듯이 음의 소득세율을 0.5라고 가정하고 현재 가구규모별 면세점 소득을 <표 3>과 같다고 가정함
- 현재 4인 가구 기준의 면세점 소득은 5,000만 원에 달하며, 1인가구는 1,850만 원, 6인 가구 이상은 6,8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가구별 소득 비중을 이용하여 가구 규모별 면세점 소득을 도출하였음

<표 3> 가구 규모별 면세점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인 가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소득 비율(4인 가구 = 1)	0.37	0.63	0.82	1.00	1.19	1.37
면세점소득(만 원)	1,850	3,150	4,075	5,000	5,925	6,850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교육급여 기준으로 비율 추정

▶ 식(1)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지원금액을 추정하면 <표 4>에서 보듯이 소득 1분위에 속한 4인 가구의 지원금은 연간 1,928만 원에 달함

- 면세점보다 높은 소득을 버는 가구를 프리드먼의 NIT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면 1인 가구는 소득 5분위까지 지원되고, 4인~6인 가구는 7분위까지 지원됨

<표 4> 프리드먼 음의 소득세 도입 시 가구당 지원금

(단위: 만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1	641.9	1,171.4	1,545.0	1,928.1	2,319.8	-	959.4
W02	531.5	1,019.1	1,356.7	1,711.8	2,093.2	2,415.5	890.3
W03	406.5	837.3	1,133.5	1,453.3	1,796.4	2,098.6	799.1
W04	257.7	622.5	844.6	1,110.9	1,435.0	1,755.5	688.0
W05	75.2	361.4	547.2	768.2	1,044.2	1,294.8	515.3
W06	-	88.0	198.5	371.4	536.9	821.6	234.7
W07	-	-	-	27.0	128.0	209.8	22.5
W08	-	-	-	-	-	-	-
W09	-	-	-	-	-	-	-
W10	-	-	-	-	-	-	-

주: 한국 복지패널자료에는 소득 1분위 중 6인 이상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필요자원 추정

▶ 통계청의 총가구조사와 복지패널조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가구원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가구수는 <표 5>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15년 총 가구수는 1,905만 가구이며, 소득 1분위 계층에 속한 1인가구 수는 119만 가구, 4인 가구수는 5만 가구에 달함
-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중은 총 가구의 27.3%에 달하며 이중 22.9%가 소득 1분위 계층에 속하고 있음

<표 5>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가구수

(단위: 가구)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1,191,588	649,196	139,433	53,834	5,642	-	2,039,694
W02	993,857	709,122	205,049	53,834	23,510	4,349	1,989,722
W03	796,126	719,110	282,968	107,668	31,974	8,699	1,946,545
W04	567,175	679,159	323,977	226,103	73,352	19,790	1,889,557
W05	379,851	559,308	401,896	337,360	138,241	35,231	1,851,886
W06	312,206	444,450	475,714	434,261	168,334	26,314	1,861,279
W07	280,986	334,586	582,339	549,106	103,445	33,056	1,883,519
W08	228,951	319,604	557,733	574,229	150,466	28,489	1,859,473
W09	202,934	259,679	553,632	678,308	138,241	26,314	1,859,108
W10	249,765	324,598	578,238	577,818	106,267	35,231	1,871,917
합계	5,203,440	4,998,812	4,100,979	3,592,520	939,473	217,474	19,052,697

주: 한국 복지패널자료에는 소득 1분위 중 6인 이상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당 지원금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추정한 총 지원금은 75조 9,157억 원에 달함

-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지원금은 총 가구수와 가구당 지원금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소득 1분위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7조 6,479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2인 가구 7조 5,972억 원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 1분위에 속한 4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1조 392억 원이고, 소득 7분위 속한 4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1,479억 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소득 8분위 부터는 지원금이 0으로 추정됨

〈표 6〉 프리드먼 음의 소득세 실시에 따른 총 지원규모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7,647.9	7,597.2	2,157.2	1,039.2	136.8	-	18,578.3
W02	5,284.5	7,240.0	2,760.2	922.6	493.7	106.1	16,807.0
W03	3,240.4	6,022.6	3,210.6	1,566.6	582.5	184.4	14,807.1
W04	1,467.5	4,220.5	2,729.1	2,500.6	1,057.6	347.1	12,322.3
W05	286.5	2,013.3	2,205.0	2,581.8	1,446.9	455.1	8,988.6
W06	-	389.0	942.4	1,613.2	902.2	216.6	4,063.3
W07	-	-	-	147.9	132.1	69.1	349.1
합계	17,926.9	27,482.5	14,004.4	10,371.8	4,751.7	1,378.4	75,915.7

주: 한국 복지패널자료에는 소득 1분위 중 6인 이상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재원조달

▶ <표 1>과 <표 2>를 고려하여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폐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근로장려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기준으로 54.8조 원에 달함⁵⁾

- 프리드먼 식 NIT를 도입할 경우 일부 복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약 2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재원 마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

가) 토빈의 음의 소득세 정의

▶ 프리드먼에 비해 토빈(1966)은 근로 역유인 효과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토빈은 음의 소득세율을 1/3으로 낮추고 동시에 면세점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 중 일부에 대해 현행 소득세를 낮춰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B_w = \frac{1}{3}(\bar{Y} - Y_w) \quad (3)$$

5) 복거일 외(2017)는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폐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근로장려금을 꼽고 있음

- 가구별 시장소득(Y_w)이 면세점 소득보다 높을 경우 지원금은 마이너스로 전화되는데 이를 음의 소득세에 대비하여 양의 소득세로 부름
- 만약 양의 소득세가 현행 소득세보다 클 경우 근로역유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를 양의 소득세율까지 인하하는 것이 토빈의 NIT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한 토빈의 세제인센티브로 부르기로 함

나)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 시 가구당 소득변화와 노동공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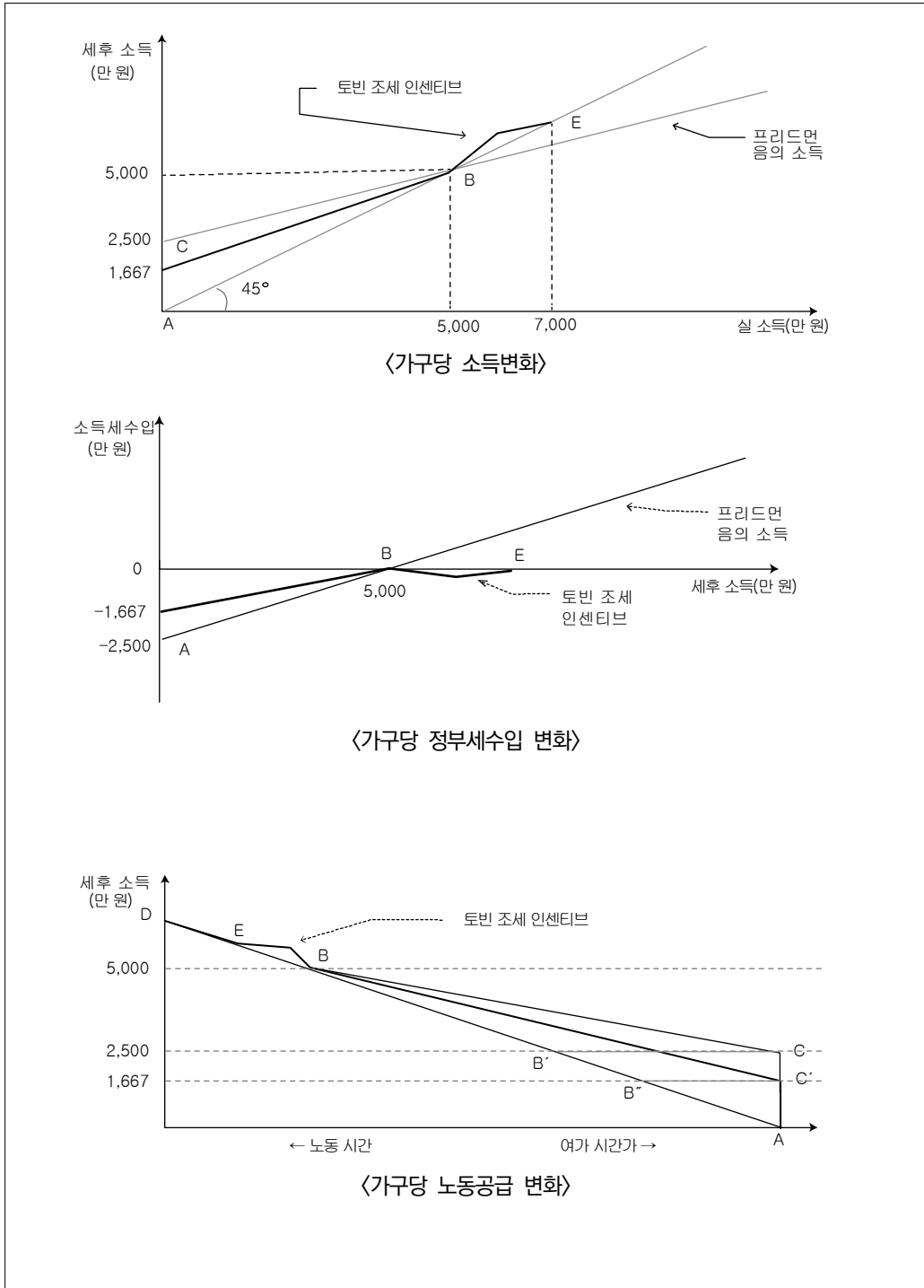
▶ 음의 소득세율을 1/3로 프리드먼의 세율보다 낮게 설정하고 면세점 소득은 프리드먼과 같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가구당 소득변화와 정부의 가구당 지원금은 <그림 2>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음의 소득세)은 4인 가구 기준 연간 1,667만 원으로 프리드먼의 2,500만 원에 비해 약 833만 원이 적을 전망
- 토빈은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일부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세제인센티브를 받는 가구는 그림에서 BE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현행 소득세율은 양의 세율까지 낮아지게 됨
- 면세점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은 프리드먼의 경우에 비해 작지만 면세점 이상의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림 2>의 세 번째 그림은 토빈의 NIT도입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토빈의 NIT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예산제약선은 AC'BED로 변하고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전망

〈그림 2〉 토빈의 음의 소득세



다)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원 규모 추정

(1) 가구별 지원금

▶ 한국의 복지패널조사 자료에 토빈의 NIT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가구규모별·소득 규모별 지원금과 세제 인센티브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음

- 소득 1분위에 속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금이 연간 642만 원으로 프리드먼의 지원금보다 약 1,286만 원이 적음
- 토빈의 근로 유인을 위한 가구당 세제 인센티브 금액은 <표 8>에서 보듯이 가구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표 7> 토빈의 음의 소득세 실시 시 가구당 지원금

(단위: 만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1	428.0	552.2	594.7	642.7	691.6	-	496.4
W02	354.3	480.4	522.2	570.6	624.1	657.4	437.4
W03	271.0	394.7	436.3	484.4	535.6	560.6	368.5
W04	171.8	293.4	325.1	370.3	427.8	463.2	288.1
W05	50.1	170.3	210.6	256.1	311.3	349.7	192.7
W06	-	41.5	76.4	123.8	160.1	219.5	80.6
W07	-	-	-	9.0	38.2	57.0	6.9
W08	-	-	-	-	-	-	-
W09	-	-	-	-	-	-	-
W10	-	-	-	-	-	-	-

주: 한국 복지패널자료에는 소득 1분위 중 6인 이상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 토빈의 근로 유인을 위한 가구당 세제 인센티브

(단위: 만 원)

가구원 소득분위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6	-0.146	-	-	-	-	-0.04
W07	-	-3.019	-9.057	-6.354	-	-4.084
W08	-	-0.145	-0.546	-4.609	-5.738	-0.785

(2) 필요자원 추정

▶ 가구당 지원금에 실제가구수를 곱하여 추정한 총 필요재원은 50조 6천억 원에 달함

-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한국의 복지지출 중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근로장려금을 폐지한다면 세계지원금 870억 원을 지출하더라도 약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절약될 전망
- 프리드먼에 비해 토빈의 음의 소득세는 현행 복지제도를 소폭 줄여도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 역유인 효과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음

<표 9>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총 지원금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5,098.6	5,064.8	1,438.1	692.8	91.2		12,385.5
W02	3,523.0	4,826.7	1,840.1	615.1	329.1	70.7	11,204.7
W03	2,160.3	4,015.1	2,140.4	1,044.4	388.4	122.9	9,871.4
W04	978.3	2,813.6	1,819.4	1,667.0	705.1	231.4	8,214.9
W05	191.0	1,342.2	1,470.0	1,721.2	964.6	303.4	5,992.4
W06	-	259.3	628.3	1,075.5	601.4	144.4	2,708.9
W07	-	-	-	98.6	88.0	46.1	232.7
W08	-	-	-	-	-	-	-
W09	-	-	-	-	-	-	-
W10	-	-	-	-	-	-	-
합계	11,951.3	18,321.7	9,336.3	6,914.6	3,167.8	918.9	50,610.5

주: 한국 복지패널자료에는 소득 1분위 중 6인 이상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0>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총 세제지원 금액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6	-0.6	-	-	-	-	-0.6
W07	-	-17.6	-49.7	-6.6	-	-73.8
W08	-	-0.8	-3.1	-6.9	-1.6	-12.5
합계	-0.6	-18.4	-52.8	-13.5	-1.6	-87.0

4. 머레이의 UBI 도입

가) 머레이의 UBI 정의

- ▶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와 달리 머레이(2016)의 UBI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머레이의 UBI는 중위소득의 50%에 달하는 소득을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머레이는 현행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층도 기존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 혜택을 상실하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보건복지에 쏟아 붓고 있지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고 개인이 알아서 이를 돌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임
 - 머레이는 UBI가 근로 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부과세를 제안하고 있음
 - 이는 일정소득이 넘는 가구에게는 일정비율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중위소득의 100% ~ 110%, 특별부과세 10%
 - 중위소득의 110% ~ 120%, 특별부과세 20%
 - 중위소득의 120% ~ 130%, 특별부과세 30%
 - 중위소득의 130% ~ 140%, 특별부과세 40%
 - 중위소득의 150% 이상, 특별부과세 50%

나) 머레이의 UBI 도입 시 가구당 소득변화와 노동공급 변화

- ▶ <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은 머레이의 UBI 도입에 따른 가구당 지원금을 보여주고 있음
 -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인 연간 2,534만 원에 달해 프리드먼의 2,500만 원에 비해 약 34만 원이 많을 전망
 - 중위소득 5,068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는 동일하게 2,534만 원씩 지급하고 중위소득 5,068만 원부터는 특별부과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됨
 - 중위소득 150%인 6,335만 원까지 특별부과세가 50%까지 공제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동일하게 50%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그림에서 보듯이 현행 소득 5,068만 원에서 6,335만 원까지 지급액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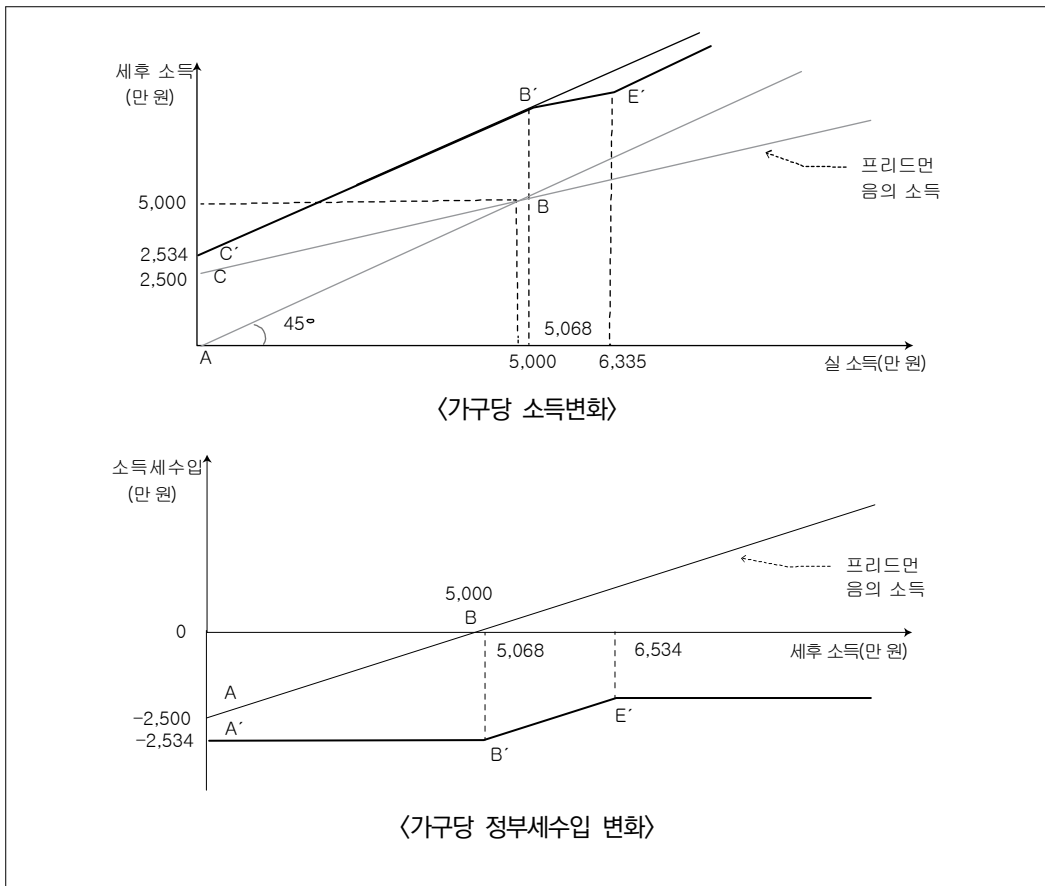
▶ <그림 3>의 두 번째 그림은 머레이의 UBI에 따른 정부세수입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구당 지원금에 상응하여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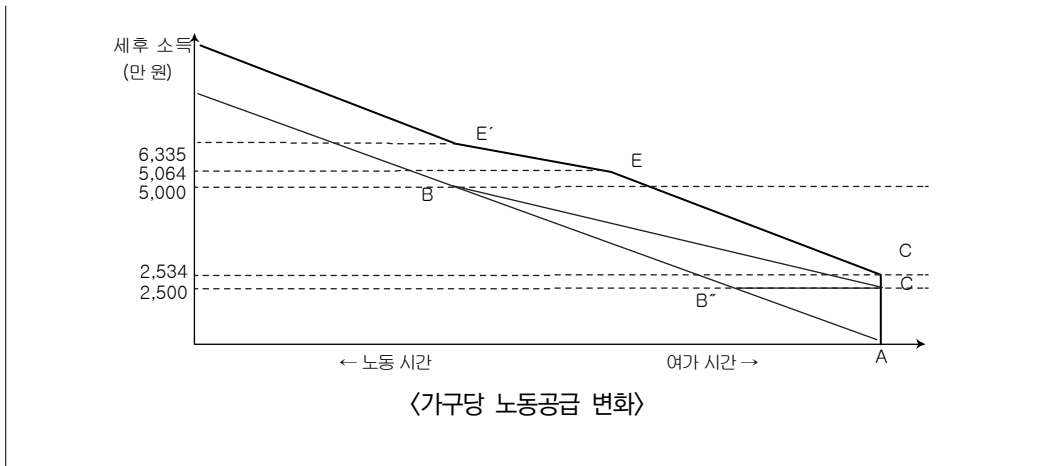
-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68만 원 이하인 가구 당 2,534만 원 세수입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당 특별부과세 만큼 세수입 감소가 감소하게 됨

▶ 세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머레이의 UBI가 도입되면 모든 소득계층의 예산 제약식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동공급의 증감효과는 불분명함

- 프리드먼의 NIT에서 설명하였듯이 노동공급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변할 전망이다

<그림 3> 머레이의 UBI





다) 머레이의 UBI 도입 시 재원 규모 추정

(1) 가구별 지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별 중위소득의 50% 소득은 <표 11>과 같음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연간 2,534만 원에 달하고 1인 가구는 937만 원에 달함

〈표 11〉 한국 가구규모별 중위 소득의 50%

(단위: 만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	937	1,596	2,065	2,534	3,002	3,471

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2015년)

▶ 중위소득의 50%를 모든 가구에 배분할 경우 1인~2인 가구는 6분위부터, 3인 가구는 7분위부터, 4인 가구는 8분위부터 부과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지원금이 감소하기 시작함

- 소득 1분위에 속한 4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2,534만 원으로 추정되며 8분위부터는 1,634만 원, 9분위는 1,267만 원으로 감소할 전망

〈표 12〉 머레이의 UBI 도입 시 가구당 지원금

(단위: 만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1	937.0	1,596.0	2,065.0	2,534.0	-	-	1,280.9
W02	937.0	1,596.0	2,065.0	2,534.0	-	-	1,341.0
W03	937.0	1,596.0	2,065.0	2,534.0	-	3,471.0	1,422.4
W04	937.0	1,596.0	2,065.0	2,534.0	3,002.0	-	1,508.6
W05	931.5	1,596.0	2,065.0	2,534.0	3,002.0	-	1,626.1
W06	727.8	1,561.4	2,065.0	2,534.0	3,002.0	-	1,590.8
W07	468.5	1,236.0	1,669.2	2,253.9	2,881.9	-	1,335.2
W08	468.5	811.2	1,240.8	1,634.0	2,187.2	-	987.2
W09	468.5	798.0	1,032.5	1,267.0	1,501.0	1,735.5	890.4
W10	468.5	798.0	1,032.5	1,267.0	1,501.0	1,735.5	891.7

주: 21세 이하 가구원은 머레이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인가구와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2) 필요자원 추정

▶ 총 지원금은 266.4조 원에 달해 현행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193.3조 원보다 73.1조 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머레이의 UB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또는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표 13〉 머레이의 UBI 도입 시 총 지원금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10,668.9	6,285.0	2,748.2	1,048.3	-	-	20,750.5
W02	9,102.2	7,108.3	4,071.4	786.3	-	-	21,068.2
W03	7,647.3	7,327.9	6,514.2	2,358.8	-	1,887.1	25,735.4
W04	5,521.0	8,398.3	7,023.2	4,979.6	910.7	-	26,832.7
W05	3,782.6	8,398.3	10,178.5	7,338.4	4,098.1	-	33,795.9
W06	2,491.9	8,672.7	10,382.1	7,862.6	2,276.7	-	31,686.0
W07	1,287.0	6,567.7	9,873.2	8,858.5	4,371.3	-	30,957.6
W08	1,081.8	4,212.9	6,972.3	9,802.0	4,644.5	-	26,713.4
W09	913.9	4,295.2	4,987.5	9,697.1	2,276.7	1,887.1	24,057.6
W10	1,119.1	3,979.6	4,987.5	11,007.6	2,732.1	943.6	24,769.4
합계	43,615.8	65,245.9	67,738.0	63,739.1	21,310.0	4,717.8	266,366.5

주: 21세 이하 가구원은 머레이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인가구와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5. 스페인의 UBI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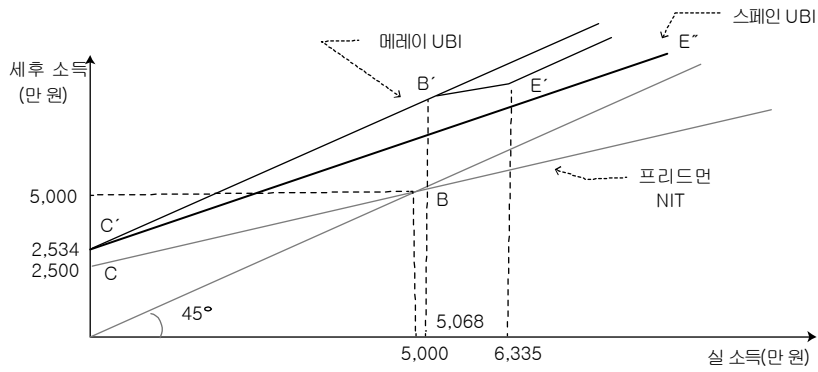
가) 스페인의 UBI 정의

- ▶ Arcarons et al.(2014)가 제안한 스페인의 UBI는 21세보다 낮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세제개혁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머레이의 UBI와 차별됨
 - 중위소득의 50%를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 지급
 - 사회보장(공적연금&사회보험)을 제외한 모든 복지제도 폐지(약 117.3조 원)
 - 모든 현행 소득세를 폐지하고 단일세제(flat tax)로 전환
 - 현행 복지제도 폐지와 기존의 소득세(자본소득세 포함) 폐지로 확보된 재원과 UBI 지원금과의 차이를 단일세로 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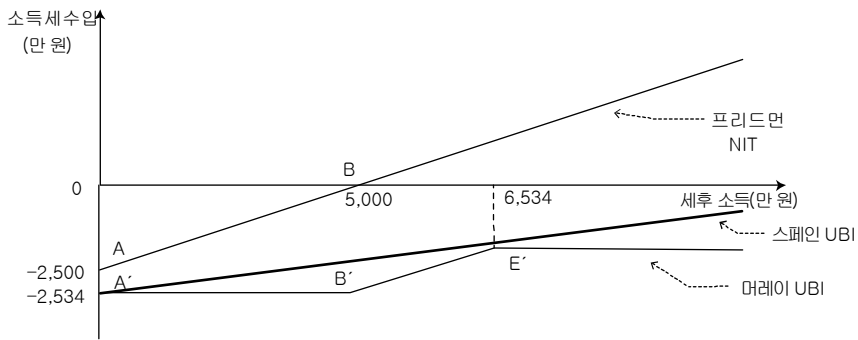
다) 스페인의 UBI 도입 시 가구당 소득변화와 노동공급 변화

- ▶ <그림 4>의 첫 번째 그림은 스페인의 UBI 도입에 따른 가구당 지원금을 보여주고 있음
 - 근로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인 연간 2,534만 원으로 머레이의 UBI와 동일함
 - 머레이의 UBI와 달리 스페인의 UBI는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동일하게 연간 2,534만 원을 지원하게 됨
- ▶ 두 번째 그림은 스페인 UBI 도입에 따른 정부의 세수입을 보여주고 있음
 - 머레이와 달리 스페인의 UBI는 세제개혁을 병행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세수입 감소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머레이의 UBI보다 스페인의 UBI에서 작을 전망이다
- ▶ 세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모든 소득계층의 예산 제약식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해 머레이의 UBI 경우보다 이동 폭은 작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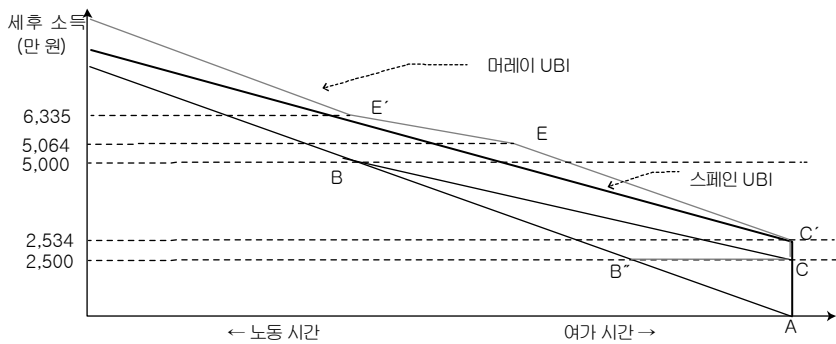
〈그림 4〉 스페인의 UBI



〈가구당 소득변화〉



〈가구당 정부세수입 변화〉



〈가구당 노동공급 변화〉

다) 스페인의 UBI 도입에 따른 자원 규모 추정

(1) 가구별 지원금

▶ 소득 1분위에 속한 4인 가구는 일차적으로 연간 2,9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추가부담은 가구규모별로 추정이 불가능하여 소득계층별로만 제시하면 <표 15>와 같음
- 가구당 평균 추가세금은 소득 1분위는 24.5만 원에 달하며 10분위는 128.4만 원에 달함

〈표 14〉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가구당 지원금

(단위: 만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1	938.3	1,600.9	2,125.6	2,930.0	4,131.1	-	1,314.3
W02	937.0	1,597.3	2,113.8	3,630.8	3,002.0	-	1,386.9
W03	937.0	1,596.0	2,075.7	2,675.6	3,002.0	3,471.0	1,461.8
W04	937.0	1,601.9	2,068.3	2,534.0	3,002.0	-	1,557.0
W05	937.0	1,596.0	2,090.1	2,534.0	3,002.0	3,471.0	1,696.6
W06	937.0	1,598.7	2,074.1	2,534.0	3,002.0	-	1,691.6
W07	937.0	1,599.4	2,065.0	2,534.0	3,002.0	3,471.0	1,765.1
W08	937.0	1,597.5	2,065.0	2,542.3	3,002.0	3,471.0	1,817.7
W09	937.0	1,597.8	2,066.3	2,534.0	3,002.0	3,471.0	1,840.7
W10	937.0	1,596.0	2,065.0	2,534.0	3,002.0	3,471.0	1,846.0

주: 18세 이하 가구원은 스페인 UBI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표 15〉 소득계층별 추가세금

(단위: 만 원)

소득분위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추가세금	24.5	28.9	48	57.3	92.1	81.4	104	117.6	123.4	128.4

(2) 필요자원 추정

▶ 정부는 기본소득제로 341.5조 원을 지원하는 반면 159.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정부의 순 지출이 182.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폐지(117.3조 원) 해도 65.2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할 전망

〈표 16〉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총 지원금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평균
W01	10,910.8	6,652.2	3,123.3	1,148.0	784.8	-	22,619.1
W02	9,027.5	7,577.3	4,612.0	1,422.6	570.3	-	23,209.7
W03	7,704.5	7,600.4	6,285.0	3,773.9	285.2	1,161.3	26,810.2
W04	5,447.6	8,747.9	7,091.4	5,162.7	1,711.0	-	28,160.6
W05	3,657.7	8,275.3	10,795.7	7,545.5	3,707.1	1,742.0	35,723.3
W06	3,035.1	9,053.5	10,435.9	7,347.0	2,851.6	-	32,723.1
W07	2,607.1	8,263.3	11,401.7	11,516.9	4,277.5	580.7	38,647.1
W08	2,218.0	7,960.0	11,125.9	15,339.6	5,418.1	580.7	42,642.2
W09	1,867.8	8,196.6	10,028.8	17,871.0	5,132.9	1,161.3	44,258.5
W10	2,295.8	7,483.0	10,206.4	20,650.9	3,707.1	2,322.6	46,665.8
합계	48,771.8	79,809.5	85,106.1	91,778.1	28,445.7	7,548.5	341,459.6

주: 18세 이하 가구원은 스페인 UBI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표 17〉 스페인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액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523.2	747.3	896.5	1,016.7	1,187.3	-	4,371.0
W02	603.6	854.8	1,042.5	1,182.1	1,278.6	-	4,961.5
W03	801.4	1,137.4	1,400.5	1,623.0	1,569.0	2,030.8	8,562.1
W04	1,148.3	1,651.3	2,035.9	2,368.6	2,708.3	-	9,912.5
W05	1,599.9	2,275.8	2,787.3	3,260.4	3,670.7	3,881.1	17,475.2
W06	1,713.8	2,451.7	3,013.5	3,390.8	3,905.2	-	14,475.0
W07	1,894.8	2,668.2	3,255.6	3,826.4	4,288.5	4,465.5	20,399.0
W08	2,286.2	3,209.4	3,994.7	4,600.3	5,140.9	5,162.5	24,394.0
W09	2,491.5	3,466.6	4,210.2	4,895.5	5,439.5	5,507.0	26,010.3
W10	2,742.4	3,696.6	4,635.3	5,282.4	5,931.0	6,130.0	28,417.7
합계	15,805.1	22,159.1	27,272.0	31,446.2	35,119.2	27,176.8	158,978.3

주: 18세 이하 가구원은 스페인 UBI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표 18〉 스페인 기본소득제의 순지출액

(단위: 십억 원)

가구원 소득분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합계
W01	10,387.6	5,904.8	2,226.8	131.3	-402.4	-	18,248.1
W02	8,423.9	6,722.5	3,569.6	240.5	-708.3	-	18,248.2
W03	6,903.1	6,463.0	4,884.5	2,150.9	-1,283.9	-869.5	18,248.1
W04	4,299.3	7,096.6	5,055.5	2,794.1	-997.4	-	18,248.1
W05	2,057.8	5,999.5	8,008.4	4,285.1	36.4	-2,139.1	18,248.1
W06	1,321.3	6,601.9	7,422.3	3,956.2	-1,053.6	-	18,248.1
W07	712.3	5,595.2	8,146.1	7,690.5	-11.1	-3,884.8	18,248.2
W08	-68.2	4,750.5	7,131.2	10,739.3	277.2	-4,581.9	18,248.1
W09	-623.8	4,730.0	5,818.6	12,975.5	-306.6	-4,345.7	18,248.0
W10	-446.6	3,786.4	5,571.1	15,368.6	-2,223.9	-3,807.3	18,248.3
합계	32,966.7	57,650.4	57,834.1	60,332.0	-6,673.6	-19,628.3	182,481.3

주: 18세 이하 가구원은 스페인 UBI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인가구의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됨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가) 가계부문

▶ 앞서 설명한 기본소득제를 평가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소득계층별 노동공급이 세분화된 CGE 모형을 구축하였음

- 가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되며, 각 소득계층은 하나의 대표 소비자로 구성되고,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여가와 소비로 구성된 시점간 (intertemporal)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로 가정함⁶⁾

$$\max U_w(Z_{w,t}) = \sum_{t=0}^{\infty} \beta^t \frac{Z_{w,t}^{1-\theta}}{1-\theta} \quad (1)$$

$$Z_{w,t} = [\alpha(C_{w,t} - \overline{C_{w,t}})^\rho + (1-\alpha)l_{w,t}^\rho]^{1/\rho} \quad (2)$$

- 여기서 β 는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며, $1/\theta$ 는 시점 간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C_{w,t}$ 와 $\overline{C_{w,t}}$ 는 w 소득계층의 소비와 최소요구소비(minimum consumption requirement)를 의미하며, $l_{w,t}$ 는 여가를 의미함
- $1/(1-\rho)$ 는 여가와 소비의 대체탄력성을 의미하며, 위의 효용함수는 최소소비를 요구하는 Stone-Geary 효용함수로 대변됨⁷⁾

▶ 소득계층별 대표소비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고 가정하면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P_{c,t}(C_{w,t} - \overline{C_{w,t}}) + P_{i,t}S_{w,t} = \quad (3)$$

$$\sum_i r_t K_{w,s,t} + \sum_i w_{w,s,t} LD_{w,s,t} + P_{w,ur,t} LU_{w,t} + \sum_f T_{w,f,t}$$

6) 대표소비자는 무한 생존 능력과 미래에 대한 완전 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음

7) 소득계층별 최소요구소비는 소득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1분위 0.915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10분위는 0.98이 되는 점에서 추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음

- 여기서 $P_{c,t}$ 소비복합재화의 세후가격을 의미하며, $P_{s,t}$ 저축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하고, $K_{w,i,t}$ 는 i 부분에서 사용한 w 소득계층의 자본을 의미하며, r_t 는 자본의 세후수익률을 의미함
- $LD_{w,i,t}$ 는 i 부분에 고용된 w 소득계층의 노동을 의미하며, $w_{w,s,t}$ 는 이에 상응하는 세후 임금을 의미함
- $LU_{w,t}$ 는 실업시간(구직기간)을 의미하고 $P_{w,ur,t}$ 는 실업시간의 가치를 의미함
- 실업시간의 가치는 실업수당을 포함하여 재교육 및 구직관련 비용 등을 포함함
- $T_{w,f,t}$ 는 w 계층에게 이전된 소득으로 f 복지를 의미함

▶ 이전소득은 사회보장급여(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구성되는데, 공공부조는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장려금, 보육·가족, 기타 부조로 나누어 반영하였음

- <표 19>는 우리나라의 2015년 총 복지지출액을 「한국의 복지패널 조사」의 소득분위별 수혜 비중을 곱하여 추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19> 소득분위별 복지수혜금액(2015년 기준)

(단위: 십억 원)

	사회 보장급여	국민기초 보장	노인 청소년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 장려금 & 일자리지원	보육가족	기타	합계
W01	17,413.4	3,738.7	2,349.3	2,223.2	2,658.3	102.1	23.5	1,961.9	30,470.4
W02	13,224.9	2,202.8	2,178.4	1,377.8	2,215.3	255.3	52.7	2,360.6	23,867.7
W03	13,502.6	1,595.0	1,596.4	1,750.3	1,550.7	226.5	135.4	2,468.2	22,825.1
W04	13,414.2	1,024.6	1,101.7	1,424.1	2,436.8	209.9	424.1	2,149.5	22,184.8
W05	10,579.4	500.9	687.0	1,982.0	3,101.4	241.0	646.0	2,610.6	20,348.3
W06	8,555.9	247.2	407.3	968.4	2,215.3	231.5	888.7	1,630.5	15,144.8
W07	6,442.2	5.8	294.2	2,021.5	2,436.8	180.1	911.4	1,761.5	14,053.6
W08	6,552.3	64.5	192.7	1,362.7	886.1	82.4	955.9	1,310.6	11,407.2
W09	5,295.4	76.9	135.0	1,498.6	-	57.8	762.4	1,059.9	8,886.0
W10	5,594.9	20.9	94.1	907.7	886.1	40.8	627.7	863.8	9,035.9
합계	100,575.2	9,477.3	9,036.2	15,516.2	18,386.7	1,627.4	5,427.8	18,177.1	178,223.9

나) 생산부문⁸⁾

▶ 생산부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과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분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시 산업과 자영업으로 분류됨

-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는 순수 임금근로자(피용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부분의 취업자와 근로시간 및 임금 비율은 <표 20>과 같음
- 산업부문과 자영업 부분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과 통계청의 「자영업 현황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하였음

〈표 20〉 산업부문과 자영업 부분의 취업 현황

	고용인원 (천 명)	인당 근로시간 (시간)	총 근로시간 (백만 시간)	임금비율
산업	9,848.9	22,578	222,365.7	1.000
자영업	6,859.5	12,578	86,279.9	0.637
합계	16,708.4	35,156	308,645.7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청 「자영업 현황 분석」

- 계층별 취업현황은 복지패널조사의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으로 배분하였음

〈표 21〉 산업부문과 자영업 부분의 소득계층별 취업 현황

	실업 (명)	비경제활동인구 (명)	산업 취업자 수 (명)	자영업 취업자 수 (명)	실업률 (%)
W01	92,380	3,880,777	-	756,485	10.9
W02	79,183	3,404,190	31,977	813,364	8.6
W03	197,958	2,734,700	185,466	841,803	16.2
W04	65,986	1,940,388	383,722	836,115	5.1
W05	118,775	1,395,718	613,956	807,676	7.7
W06	145,169	873,742	1,195,935	648,416	7.3
W07	145,169	737,575	1,451,749	608,601	6.6
W08	39,592	431,197	1,713,960	551,722	1.7
W09	39,592	385,808	2,027,333	540,347	1.5
W10	13,197	192,904	2,244,776	455,029	0.5
합계	937,000	15,977,000	9,848,873	6,859,559	5.3

8) 수식을 통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자세한 내용은 조경엽 외(2014) 참조

다) 노동부문

▶ 본고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노동의 흐름을 3단계로 모형에 반영하였음

-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여가와 노동으로부터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실업과 고용인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였음
- 소득계층별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음

$$L_{w,t} = \sum_i LD_{w,s,t} \quad (4)$$

- 여기서 $L_{w,t}$ 는 w 계층의 노동공급 중 i 부분에 고용된 시간을 의미함
- 노동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w 소득계층에 주어진 총 시간 $\overline{L}_{w,t}$ 는 다음과 정의할 수 있음

$$\overline{L}_{w,t} = L_{w,t} + LU_{w,t} + l_{w,t} \quad (5)$$

- w 계층별 총 시간은 총 노동시간, 구직시간, 여가의 합과 같음

▶ 비자발적 실업을 모형화하는 방법으로는 매칭이론, 효율임금(efficiency wage), 부문간 이동(migration) 이론을 꼽을 수 있음⁹⁾

- 이 세 가지 이론 모두 임금과 실업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임금곡선(wage curve)으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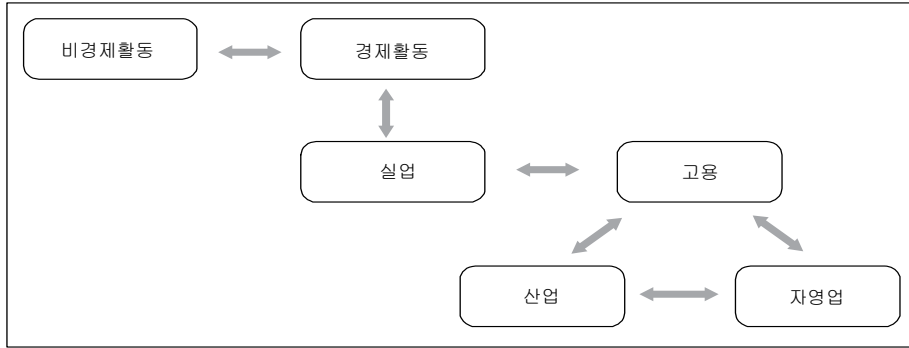
$$\frac{W}{P} = wr^\beta \quad (6)$$

- 여기서 좌변은 명목임금(W)을 물가(P)로 나눈 실질임금을 의미하며, w 는 실업률을 의미하고, β 는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률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함
- Blanchflower & Oswald(1995)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탄력성은 -0.1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임금이 10% 오르면 실업이 1%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¹⁰⁾

9) 매칭이론은 노동조합이 임금을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며, Slow(1979)와 Shapiro and Stiglitz(1984)의 효율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임금보다 임금을 높게 책정하여 실업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Harris and Todaro(1970)에 따르면 지역간 임금격차로 노동의 이동(migration)이 발생하는데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이 몰리면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노동관련 캘리브레이션은 Boeters and Savard(2011) 참조

〈그림 5〉 노동의 흐름도



▶ 고용은 산업과 자영업 종사자로 구분되며, 자영업은 완전경쟁의 임금결정원리가 작동하는 분야로 가정하고, 산업부문은 노동조합과 고용주와의 협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불완전경쟁의 노동시장으로 가정하였음

- Pissarides(1990)의 매칭이론(search and matching)에 따르면 매칭이 성사되면 잉여(rent)가 발생하고, 잉여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대적인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의해 배분비율이 결정됨
- 잉여의 배분법칙(sharing rule)은 Nash 협상 게임으로 도출되는데, Nash 협상 게임의 목적함수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목적함수로 구성됨
- 노동조합의 목표는 고용확률을 높이고 실업확률을 낮춰 조합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고용주의 목표는 구직자리(vacancy job)를 줄이고 채용자리(occupied)를 늘려 구직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 Nash 협상게임을 통해 고용수준과 임금수준이 결정됨
- 본 연구는 Ferri et al.(2004)이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매칭효과를 모형에 반영하였음

$$E_i = G(E, ur) F(L_i) \quad (7)$$

- 여기서 E_i 는 i 부분에서 매칭이 성사된 근로자수를 의미하고, L_i 는 i 부분에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수를 의미하며, E 와 ur 은 경제 전체의 매칭된 일자리수와 실업률을 의미함
- 위의 식은 i 부분에서 매칭이 성사된 근로자수는 경제 전체의 매칭 근로자수와 실업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식 (7)은 규모에 대해 체증함수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인한 렌트가 $G(E, ur)$ 만큼 발생하게 되고 이는 협상력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¹¹⁾

11)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함수는 일반 균형조건을 만족하지 않음. 이를 CGE 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Markusen (1990)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음

2. 분석결과

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¹²⁾

- 직접효과는 노동공급 변화, 소비·투자 변화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함
- 소득이 변하면 노동공급, 소비, 저축 등 개별 가계주체의 의사결정은 물론 생산, 판매, 고용, 투자, 수출입 등 산업 및 거시경제변수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도 함께 발생하게 됨
- 기본소득제의 순효과는 이와 같은 직·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한 효과를 의미함

▶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스페인의 UBI가 가장 크고 다음은 프리드먼, 토빈, 머레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페인 제도의 경우 지니계수가 0.259로 추정되어 도입전보다 소득재분배가 24.7%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지니계수는 0.344에서 0.265로 낮아져 23%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토빈의 NIT는 0.277로 측정되어 19.5%의 개선효과가 발생하며, 머레이의 UBI는 0.296으로 낮아져 14%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토빈의 NIT가 프리드먼의 NIT보다 소득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근로 유인을 개선하기 위해 중상위 계층의 세금을 인하해 주고 있기 때문임
- 머레이의 UBI가 가장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이유는 고소득층에게도 많은 기본소득이 제공되기 때문임
- 스페인의 경우도 고소득에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지만 세제개혁에 따른 세부담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재분배의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함께 고려될 때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UBI 제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유인이 감소하는데, 소득에 대한 노동의 공급탄력성은 일반적

12) 복거일 외(2017)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안심소득제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하고 있음. 복거일 외(2017)는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고 안심소득제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정하고 있어 본연구의 추정 값과 차이가 있음

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저소득층 일수록 크게 나타남

-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한 순효과는 프리드먼에서 지니계수가 0.331로 측정되어 기준에 비해 3.8%의 소득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 토빈 NIT의 경우 최종 지니계수가 0.341로 측정되어 기준에 비해 0.9%에 달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UBI는 노동 역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머레이의 UBI의 최종 지니계수는 0.354로 측정되어 기준에 비해 소득재분배가 2.9% 악화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기준에 비해 소득재분배가 0.3%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22〉 지니계수 변화

		기준 (a)	직접효과		순효과		간접효과
			지니 (b)	기준대비 변화 (%) (b/a-1) x100	지니 (c)	기준대비 변화(%) (c/a-1) x100	직접효과 대비 변화(%) (c/b-1) x100
NIT	프리드먼	0.344	0.265	-23.0	0.331	-3.8	24.9
	토빈	0.344	0.277	-19.5	0.341	-0.9	23.1
UBI	머레이	0.344	0.296	-14.0	0.354	2.9	19.6
	스페인	0.344	0.259	-24.7	0.345	0.3	33.2

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른 표본조사 자료에 비해 표본 수에 저소득계층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지니계수 값은 가계동향조사 등 다른 표본조사에서 추정되는 지니계수 값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표되는 지니계수의 값과 기준균형의 지니계수 값이 유사하도록 저소득층의 표본 수를 조정하였음

나) 노동변화

(1) 소득계층별 실업률 변화

▶ NIT가 도입되면 중하위 계층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중상위계층의 실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소득증가에 따른 근로 역유인 효과로 인해 지원금이 집중되는 중하위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가 도입되면 실업률은 각각 소득 6분위와 소득 5분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청년비중이 높은 소득 3분위의 실업률이 치솟아 NIT가 청년실업 해소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UBI의 경우 모든 계층의 실업률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 머레이의 UBI의 경우 모든 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스페인의 UBI도 소득 10분위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실업이 증가할 전망
-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3분위 계층의 실업률은 머레이의 UBI에서 5.9%p, 스페인 UBI에서 9.9%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23〉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실업률 변화

	현재 실업률 (%)	프리드먼		토빈		머레이		스페인	
		실업률 (%)	변화 (%p)	실업률 (%)	변화 (%p)	실업률 (%)	변화 (%p)	실업률 (%)	변화 (%p)
W01	10.9	14.4	3.5	12.0	1.1	15.9	5.0	19.6	8.7
W02	8.6	13.6	5.1	10.4	1.8	15.1	6.5	18.5	10.0
W03	16.2	21.2	5.0	18.2	2.0	22.1	5.9	26.1	9.9
W04	5.1	9.2	4.0	6.5	1.4	10.8	5.7	12.7	7.6
W05	7.7	9.6	1.9	7.8	0.1	14.8	7.1	13.3	5.6
W06	7.3	7.8	0.5	6.9	-0.4	13.9	6.6	11.6	4.3
W07	6.6	5.8	-0.8	5.2	-1.4	12.5	5.9	10.2	3.6
W08	1.7	1.5	-0.2	1.2	-0.5	6.2	4.5	4.1	2.4
W09	1.5	1.4	-0.1	1.2	-0.3	5.1	3.6	2.1	0.6
W10	0.5	0.4	-0.1	0.4	-0.1	2.6	2.2	0.0	-0.5

(2) 노동행태 변화

▶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프리드먼의 NIT의 경우, 총 실업자는 21,512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422,286명, 산업 종사자는 46,120명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510,143명 감소할 전망이다
- 기본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 유인이 감소하여 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거나 비자발적 실업상태로 남는 인구가 증가함
- 자영업에서 저소득층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기 때문임
- 또 다른 이유는 자영업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고 있어 산업부문에 비해 실질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이 증가하면 자영업으로부터 노동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표 24〉 프리드먼 NIT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단위: 명)

	실업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W01	3,257	81,219	0	-84,477
W02	4,006	81,811	-1,658	-84,159
W03	9,928	84,964	-9,271	-85,620
W04	2,652	84,845	-13,718	-73,779
W05	2,238	57,954	-7,232	-52,959
W06	793	32,019	1,638	-34,450
W07	-1,202	-268	24,767	-23,297
W08	-92	8,427	16,625	-24,960
W09	-57	8,440	16,786	-25,169
W10	-11	3,101	18,183	-21,273
TOTAL	21,512	442,511	46,120	-510,143

▶ 토빈의 NIT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프리드먼의 경우와 같이 산업과 자영업에서 나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거나 실업으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전망

- 총 실업자는 4,570명 증가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0,312명 증가하고, 산업 종사자는 57,663명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112,545명 감소할 전망이다
- 토빈의 경우 중위소득계층에게 토빈의 세제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6분위 계층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5〉 토빈의 NIT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단위: 명)

	실업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W01	1,023	25,507	0	-26,530
W02	1,440	27,085	-790	-27,736
W03	4,011	28,617	-4,460	-28,167
W04	926	25,571	-5,836	-20,660
W05	99	6,103	688	-6,889
W06	-614	-5,546	8,073	-1,913
W07	-1,971	-29,515	26,393	5,094
W08	-207	-13,780	14,637	-651
W09	-120	-8,536	10,968	-2,313
W10	-16	-5,195	7,991	-2,780
TOTAL	4,570	50,312	57,663	-112,545

▶ UBI가 도입되면 근로 역유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 계층에 걸쳐 산업 및 자영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 머레이의 UBI가 도입되면 총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55,376명과 1,517,653명 증가하고, 산업과 자영업 종사자는 377,157명과 1,195,873명 감소할 전망이다
-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총 실업자는 59,780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1,517,178명 증가하고, 산업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는 각각 34,330명과 1,542,629명 감소할 전망이다
- 스페인의 UBI는 기존의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병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머레이의 UBI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6〉 머레이의 UBI 도입에 따른 노동변화

(단위: 명)

	실업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W01	4,648	118,992	0	-123,640
W02	5,165	126,516	-738	-130,943
W03	11,741	140,211	-6,766	-145,186
W04	3,767	150,081	-12,444	-141,404
W05	8,444	183,939	-36,801	-155,583
W06	9,568	190,236	-73,921	-125,883
W07	8,569	189,167	-82,285	-115,452
W08	1,780	167,694	-71,781	-97,693
W09	1,408	150,427	-61,489	-90,346
W10	285	100,390	-30,933	-69,742
TOTAL	55,376	1,517,653	-377,157	-1,195,873

〈표 27〉 스페인의 UBI에 따른 노동 변화

(단위: 명)

	실업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W01	8,077	193,738	0	-201,815
W02	7,906	189,231	-1,815	-195,321
W03	19,586	208,928	-13,964	-214,550
W04	5,002	206,971	-17,977	-193,995
W05	6,611	192,067	-20,359	-178,319
W06	6,219	170,133	-35,244	-141,108
W07	5,262	164,032	-38,384	-130,910
W08	939	138,262	-25,607	-113,594
W09	242	83,235	17,557	-101,034
W10	-64	-29,419	101,464	-71,981
TOTAL	59,780	1,517,178	-34,330	-1,542,629

다) GDP 변화

▶ 토빈의 NIT가 도입되면 GDP는 0.41% 증가하는 반면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0.18%, 머레이의 UBI가 도입되면 5.07%,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2.4% 감소할 전망

- 토빈의 NIT에서 GDP가 증가하는 이유는 총지출규모가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를 폐지하는 규모보다 작아 노동의 역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8〉 GDP 변화

(단위: %)

	GDP 변화
프리드먼	-0.18
토빈	0.41
머레이	-5.07
스페인	-2.40



IV. 시사점

- ▶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노동의 역유인 효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는 상황임
 - 스위스에서 국민 모두에게 약 300만 원을 보장하는 UBI가 제안되었으나 국민투표로 부결될 바 있으며,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25~58세에 해당하는 실업자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월 7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를 크게 NIT와 UBI로 나누고 한국에 도입될 때 가구당 지원규모, 필요재원 규모를 추정하고 소득재분배와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을 통해 평가하였음
- ▶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재원충당이 가능한 토빈의 NIT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UBI를 도입하면 심각한 재원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 1분위 계층에 속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은 프리드먼 NIT 1,928만 원, 토빈 NIT 642.7만 원, 머레이 UBI 2,534만 원, 스페인 UBI 2,930만 원으로 추정됨
 - 스페인 UBI 경우 25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에서 폐지할 수 있는 현행 복지제도를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 일반, 근로장려금이라고 가정할 때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54.8조 원에 달함
 - 따라서 프리드먼의 NIT가 도입되면 약 21.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한 반면 토빈의 경우는 4.1조 원의 재원이 남을 전망이다
 - 머레이 UBI가 도입되면 총 266.4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193.3조 원보다 73.1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
 - 스페인의 UBI가 도입되면 총 34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사회보장(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제외한 모든 공적부조를 폐지해서 확보한 117.3조 원과 세제개편을 통해 159조 원을 조달해도 여전히 약 65.2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함

〈표 29〉 가구당 수혜금액과 총 필요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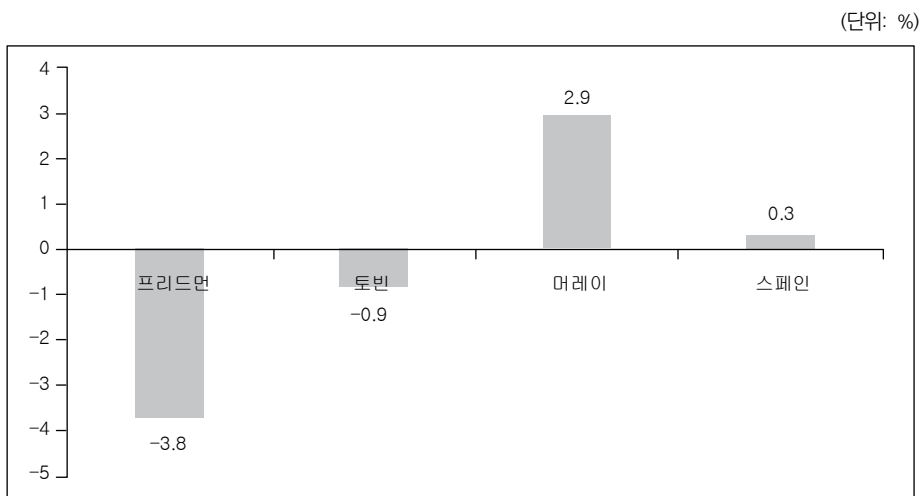
	프리드먼	토빈	머레이	스페인
4인 가구 1분위 기준 (만 원)	1,928.1	642.7	2,534	2,930 (-259.5)
총 필요 재원 (십억 원)	75,915.7	50,610.5	266,366.5	341,459.6 (-158,978.3)

주: ()는 추가 세부담을 의미함

▶ 모든 기본소득제가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근로 역유인 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며, UBI는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는 소득재분배를 각각 3.8%와 0.9%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머레이와 스페인의 UBI는 소득재분배를 각각 2.9%와 0.3% 악화시킬 전망이다

〈그림 6〉 지니계수 감소효과



▶ 실업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근로 역유인 효과는 NIT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UBI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

- 청년비중이 높은 3분위 계층의 실업은 스페인의 UBI에서 26.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모든 제도에서 실업과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지만, 특히 UBI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프리드먼과 토빈의 NIT의 경우 고소득층의 고용이 증가하여 산업 종사자는 각각 46,120명과 57,66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30〉 노동 변화

(단위: 명)

	실업	비경제활동	제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프리드먼	21,512	442,511	46,120	-510,143
토빈	4,570	50,312	57,663	-112,545
머레이	55,376	1,517,653	-377,157	-1,195,873
스페인	59,780	1,517,178	-34,330	-1,542,629

▶ 정책적 시사점

- 선거 때마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행정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복지제도의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필요재원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노동의 역유인 효과와 기대 이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전에 철저한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필요 재원규모, 노동의 역유인 효과,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UBI 보다는 NIT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소득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행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한다는 기본전제가 엄수되는 것임
 -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를 그냥 두고 도입되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에 불과하여 기본소득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노동공급 감소, 소득재분배 악화, 자원낭비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본소득제로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복거일·김우택·이영환·박기성·변양규(2017),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한국경제신문
-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6), 「대한민국재정 2016」
- 국회예산정책처(2014), 「2015년도 분야별 분석 I」.

[해외문헌]

- Arcarons, J., R. P. Daniel, and T. M. Lluís(2014), “Feasibility of Financing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9(1-2).
- Boeters, S. and L. Savard(2011), “The labor Market in CGE Models”, in 「Handbook of CGE Modeling」 edited by Dixon and Jorgenson.
- Blanchflower, D.G. and A. J. Oswald(1995), 「The Wage Curve」, MIT Press.
- Ferri J., M. L. Molto, and E. Uriel(2004), “ Taxation with Unemployment and Household Production: a Coumputable Approach”, http://www.uv.es/fferri/Nueva_carpeta/Research/Taxation.pdf.
- Friedman, M.(1962), 「Capitalism and Free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J. R. and M. P. Todaro(1970), “Mitig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 Markusen, J. R. and T. Rutherford(2004), “MPSGE User’s Guide”, University of Colorado.
- Moffit, R. A.(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17, No.3.
- Murray, C. A.(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AEI Press.
- Pissarides, C. A.(1990),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Basil Blackwell Press.
- Tobin(1966), “The Case for an income Guarantee”, in 「National Affairs」, N31, Spring 2017.
- Tobin, J., J. Pechman, and P. Mieszkowski(1967),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l?”, Yale Law Journal 77.

Shapiro, C. and J. E. Stiglitz(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4.

Solow, R.(1979), "Another Possible Sources of Wage Stickiness", Journal of Macroeconomics 1.